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검 토 보 고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 관련 법적 체계 마련 〉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53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총괄 검토	5
가.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입법 필요성	5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11
2. 조문별 검토	19
가. 총칙(제1장)	19
나.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제2장)	24
다.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공동이용 등(제3장) ..	36
라.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 안전관리 및 보호(제4장)	44
마. 수소·수소화합물 수급관리(제5장)	57
바. 수소거래소 등(제6장)	62

사.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제7장)	68
아. 감독(제8장)	74
자. 보칙(제9장)	77
차. 벌칙(제10장)	85
카. 부칙	93
 ※ 참고자료	 100
1.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요약)	80
2.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 관련 민간사업자 의견	8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광상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31.
3. 회부연월일 : 2025. 11.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마련, 수소 전문기업 육성,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 수소 전문인력양성 등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수소사업 인허가, 수급관리, 사업자 의무 및 사용자 보호 등 건전한 수소시장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수소는 수소 모빌리티, 수소 발전 등 청정 에너지원으로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수소사업을 추진중이거나 혹은 수소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바, 수소에 대해서도 석유, 천연가스 등 타 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과 같은 별도의 사업법을 제정하여 수소사업 진출입 및

건전한 시장 형성에 관한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수소사업 인허가, 사업자의 의무, 원활한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제도, 수소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소거래소 도입, 수소인프라 구축 등 수소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 수입·제조 부담금 등을 규정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산업 생태계 및 수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소, 수소화합물, 수소·수소화합물사업, 수소·수소화합물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인수기지업, 수출입업, 제조업, 판매업, 운송업, 반출입업의 인허가 기준 및 절차, 결격사유, 지위 승계, 사업 개시, 허가·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다.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에게 타 사업자에 대한 배관시설·인수기지 공동이용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배관시설·인수기지 이용료 등 이용규정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라.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가 배관시설·인수기지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며, 발전용 연료 공급 시설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례를 둬(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안 제19조), 이와 관련된 시설·기술기준, 시공 감리, 시설 임시사용, 시설 검사,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관리 규정을 도입(안 제20조부터 제39조까지).

바. 일정한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게 매년 5개년의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수소·수소화합물 수급을 예측하도록 하며, 정부는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자에게 비축의무를 부여함(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사.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수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아. 수소 수급 및 가격안정,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자원 마련 필요성, 석유·가스 등 타 에너지원과의 형평성, 미래 에너지 전

환에 따른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대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징수 기준, 환급, 부담금 징수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다만, 수소산업 생태계 초기 사업자 부담을 감안하여 그 시행시기는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 대한 조정 명령, 지자체장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자의 정부와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와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사고의 통보 등을 규정함(안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차. 수소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판매가격 보고 의무 및 부정 판매, 사재기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인허가 취소·영업장 폐쇄 등과 관련하여 청문 절차와 인허가 취득 시 수수료 납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61조까지).

카. 법률상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입법 필요성

수소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에너지이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완하고 최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따라 부족해진 계통 유연성도 확보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내에 수소경제를 육성하고 수소 생태계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범부처 조직인 수소경제위원회²⁾를 두어 수소 경제 활성화를

1) 현재 전기를 저장하는 수단은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나 양수발전소인데 수소는 전기로 물을 분해하는 수전해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수소경제위원회) ①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와 관련된 정책 조정·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와 관련된 국가 간 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업 등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수소경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음.

또한,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로 발전한 전기를 매년 일정규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 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도입³⁾하였고 2028년부터 발전을 시작하기 위하여 2024년 6월 처음으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어 낙찰⁴⁾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 2월에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따르면 2030년 청정수소 발전량 15.5TWh(발전량 비중 2.4%), 2038년 43.9TWh(발전량 비중 6.2%) 공급을 목표로 청정수소 발전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므로 향후 발전용 수소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용인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의 경우 신속한 전력수급을 위해 단지 내 3GW 규모의 LNG 발전설비가 구축되는데 향후 수소 혼소·전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수소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 ⑧ (생략)

3)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사업자가 청정수소를 사용하여 발전한 전기를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입찰시장을 통해 발전량을 공급할 발전사업자를 낙찰함.

4) 한국남부발전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에서 낙찰되어 유일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삼척빛드림본부 1호기를 대상으로 석탄과 무탄소연료인 암모니아 혼소를 통해 연간 7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임.

그리고 2022년 11월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⁵⁾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의 수소버스 도입, 특수자동차인 수소트럭·수소청소차·수소지게차 보급 등을 통해 수송용 수소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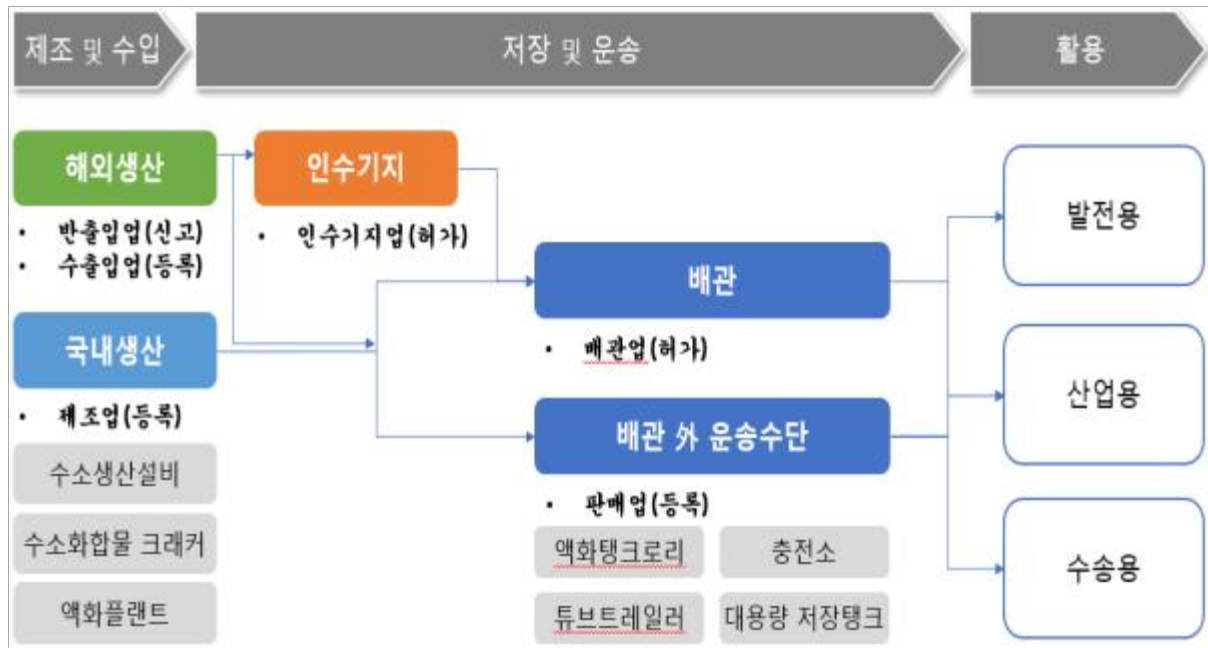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국내 탄소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철강산업은 현재 환원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기술개발 및 설비 전환이 완료되면 현재 미미한 산업용 수소의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임.

이처럼 정부의 수소 생태계 조성 추진에 따라 향후 발전용·수송용·산업용 수소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사업자들이 수소 수급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수소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수소의 도입·제조부터 시작해서 운송·판매 및 최종 소비까지의 밸류체인(Value Chain)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법적·행정적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5)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1] 참조

[수소 사업 밸류체인(Value Chain) 예시]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현재 수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고압의 수소기체를 다루는 사업자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⁶⁾을 적용받고 있고 수소 분야에 관련된 유일한 현행법인 「수소법」은 정부가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⁷⁾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를 「수소법」에 구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아 수소사업을 위한 별도의 법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6) 현재 수소·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및 신고(제4조),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제5조의3),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제5조의4)을 통해 수행 중임.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제정안은 수소 및 수소화합물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수소 공급계획, 수급예측, 비축 등 수급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수소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및 수소·수소화합물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수소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있는 상황에서 동 제정안과 같은 별도의 수소 사업 관련 법체계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국내 수소 분야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수소는 대부분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⁸⁾로 국내에서 수전해 방식으로 청정수소를 직접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도입하는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 중임.

또한, 국내에는 수소 유통을 위한 배관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⁹⁾ 수소 생산기지, 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도 확대하는 중에 있어 수송용 수소는 일반적으로 차량인 수소 튜브트레일러(TT)¹⁰⁾를 이용하여 공급하

8)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약 240만톤 규모의 수소가 유통 중이며 그 중 대부분은 부생수소임.

9)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부 도시(울산, 안산 등)에 수송용 및 연료전지용 부생수소·개질수소 유통을 위한 8인치 이하 소구경 배관을 구축하고 있을 뿐, 아직 청정수소 발전용 대구경 공용 배관은 구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고 있고 수송용 수소에 대한 수요도 아직 소규모임.

이는 아직까지 높은 수소 생산 단가로 인해 수소를 산업계나 발전 설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아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전후 수소발전 비중이 확대¹¹⁾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소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전반적인 수소 수요가 증가하면 이에 맞추어 수소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함.

따라서 동 제정안의 입법필요성은 아직 수소 생태계가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미리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선제적인 입법을 통해 수소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 제정안은 배관시설·인수기지의 이용, 배관시설의 안전관리, 수소·수소화합물 수급관리, 수소거래소 지정, 수입·제조 부담금 부과

10) 수소 튜브트레일러는 전용 용기에 기체 수소를 고압(200bar/450bar)으로 저장하여 차량에 적재한 후 수송하는 수단임.

1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소 발전의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약 2.4%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100만톤 규모의 청정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등 기존에 없던 수소·수소화합물에 대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도입되는 사항들이 적절한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어, 현행은 고압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저압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 배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수소의 안전관리 체계가 3개의 법률로 분산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또한, 제정안은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 수소거래소 제도, 수입·제조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시행시기는 공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유예하고 있는데, 국내 수소 생태계 조성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시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 분야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수소 공급계획, 수급 예측, 비축 등 안정적인 수소 수급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총 10장, 69개의 조문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제정안의 목적, 정의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수소 관련 사업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인수기지업, 제조업, 수출입업, 판매업, 운송업, 반출입업의 허가·등록·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3장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유지·관리·이용에 관한 사항과 배관시설·인수기지 구축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5장은 수소·수소화합물의 수급관리 및 비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장은 수소거래소의 지정 및 수소·수소화합물의 공급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7장은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8장은 조정명령, 보고, 조사 등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 대한 기
후에너지환경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제9장은 보칙으로서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금지
행위, 청문 및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10장 벌
칙에서는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부칙에서는 시행일 외에 기존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과 「수소법」 및 「에너지 및 자
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 규정을 두고 있음.

[제정안의 구성 체계]

구 분	세부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1) ▪ 정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3)
제2장 수소·수소화합물 사업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및 인수기지업의 허가(§4) ▪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및 제조업의 등록(§5) ▪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 및 운송업의 등록(§6) ▪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의 신고(§7) ▪ 결격사유(§8) ▪ 지위 승계(§9)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10) ▪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11)

구 분	세 부 조 문
	▪ 허가·등록의 취소 등(§12) ▪ 과징금(§13)
제3장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공동이용 등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유지·관리 및 공동이용 등(§14) ▪ 배관시설·인수기지 이용규정(§15) ▪ 실시계획의 승인 등(§16)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17) ▪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한 특례(§18)
제4장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 안전관리 및 보호	▪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19) ▪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20) ▪ 공공용 토지의 사용(§21)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시공·관리(§22) ▪ 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23) ▪ 시공 감리 등(§24)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임시사용(§25)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26)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27) ▪ 상세기준(§28) ▪ 안전관리규정(§29)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안전유지(§30)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개선명령 등(§31) ▪ 안전관리자(§32) ▪ 안전교육(§33)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에 대한 정보지원(§34)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매설상황 확인(§35) ▪ 수소·수소화합물 안전 영향평가(§36) ▪ 협의·순회점검(§37)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손상방지기준의 준수(§38)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안전조치 등(§39)

구 분	세부 조문
제5장 수소·수소화합물 수급관리	▪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40) ▪ 수소·수소화합물 수급예측(§41) ▪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42) ▪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43)
제6장 수소거래소 등	▪ 수소거래소의 지정 등(§44) ▪ 공급규정(§45)
제7장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	▪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46) ▪ 부담금의 환급 등(§47) ▪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48) ▪ 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49)
제8장 감독	▪ 조정명령(§50) ▪ 지도·감독(§51) ▪ 보고와 조사 등(§52) ▪ 사고의 통보 등(§53)
제9장 보칙	▪ 보험가입(§54) ▪ 다른 자의 토지 사용(§55) ▪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56) ▪ 금지행위(§57) ▪ 청문(§58) ▪ 수수료 등(§59) ▪ 권한의 위임·위탁(§60)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61)
제10장 벌칙	▪ 벌칙(§62) ▪ 벌칙(§63) ▪ 벌칙(§64) ▪ 벌칙(§65) ▪ 벌칙(§66) ▪ 양벌규정(§67)

구 분	세부 조문
	- 과태료(§68)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69)
부칙	- 시행일(§1) -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2) - 다른 법률의 개정(§3)

한편,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종배·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605호)이 2025년 1월 17일에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제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두 제정안은 모두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수소·수소화합물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와 내용이 대체적으로 유사함.

다만, ① 이종배·정태호의원안은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와 운송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운송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동 제정안은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과 “수소·수소화합물 운송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 동 제정안은 이종배·정태호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 안전관리 및 보호(제4장)”에 관한 사항과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제7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제정안 비교]

이종배·정태호의원안 (의안번호 제2207605호)	곽상언의원안 (의안번호 제2213853호)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 목적(§1) ▪ 정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3)	▪ 목적(§1) ▪ 정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3)
제2장 수소·수소화합물 사업	제2장 수소·수소화합물 사업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및 인수기지업의 허가(§4) ▪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및 제조업의 등록(§5) ▪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운송업의 등록(§6) ▪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의 신고(§7) ▪ 결격사유(§8) ▪ 지위 승계(§9)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10) ▪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11) ▪ 허가·등록의 취소 등(§12) ▪ 과징금(§13)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및 인수기지업의 허가(§4) ▪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및 제조업의 등록(§5) ▪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 및 운송업의 등록(§6) ▪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의 신고(§7) ▪ 결격사유(§8) ▪ 지위 승계(§9)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10) ▪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11) ▪ 허가·등록의 취소 등(§12) ▪ 과징금(§13)
제3장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공동이용 등	제3장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공동이용 등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유지·관리 및 공동이용 등(§14) ▪ 배관시설·인수기지 이용규정(§15) ▪ 실시계획의 승인 등(§16)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17) ▪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한 특례(§18)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유지·관리 및 공동이용 등(§14) ▪ 배관시설·인수기지 이용규정(§15) ▪ 실시계획의 승인 등(§16)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17) ▪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한 특례(§18)

이종배·정태호의원안 (의안번호 제2207605호)	곽상언의원안 (의안번호 제2213853호)
	제4장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 안전관리 및 보호
	▪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19) ▪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20) ▪ 공공용 토지의 사용(§21)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사공·관리(§22) ▪ 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23) ▪ 시공 감리 등(§24)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임시사용(§25)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26)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27) ▪ 상세기준(§28) ▪ 안전관리규정(§29)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안전유지(§30)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개선명령 등(§31) ▪ 안전관리자(§32) ▪ 안전교육(§33)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에 대한 정보지원(§34)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매설상황 확인(§35) ▪ 수소·수소화합물 안전 영향평가(§36) ▪ 협의·순회점검(§37)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손상방지 기준의 준수(§38)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안전 조치 등(§39)
제4장 수소·수소화합물 수급관리	제5장 수소·수소화합물 수급관리
▪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19) ▪ 수소·수소화합물 수급예측(§20) ▪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21) ▪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22)	▪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40) ▪ 수소·수소화합물 수급예측(§41) ▪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42) ▪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43)
제5장 수소거래소 등	제6장 수소거래소 등
▪ 수소거래소의 지정 등(§23) ▪ 공급규정(§24)	▪ 수소거래소의 지정 등(§44) ▪ 공급규정(§45)

이종배·정태호의원안 (의안번호 제2207605호)	곽상언의원안 (의안번호 제2213853호)
	<u>제7장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u>
	▪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46) ▪ 부담금의 환급 등(§47) ▪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48) ▪ 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49)
제6장 감독	제8장 감독
▪ 조정명령(§25) ▪ 지도·감독(§26) ▪ 보고와 조사 등(§27) ▪ 사고의 통보 등(§28)	▪ 조정명령(§50) ▪ 지도·감독(§51) ▪ 보고와 조사 등(§52) ▪ 사고의 통보 등(§53)
제7장 보칙	제9장 보칙
▪ 보험가입(§29) ▪ 다른 자의 토지 사용(§30) ▪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31) ▪ 금지행위(§32) ▪ 청문(§33) ▪ 수수료 등(§34) ▪ 권한의 위임·위탁(§35)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36)	▪ 보험가입(§54) ▪ 다른 자의 토지 사용(§55) ▪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56) ▪ 금지행위(§57) ▪ 청문(§58) ▪ 수수료 등(§59) ▪ 권한의 위임·위탁(§60)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61)
제8장 벌칙	제10장 벌칙
▪ 벌칙(§37) ▪ 벌칙(§38) ▪ 벌칙(§39) ▪ 벌칙(§40) ▪ 벌칙(§41) ▪ 양벌규정(§42) ▪ 과태료(§43)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44)	▪ 벌칙(§62) ▪ 벌칙(§63) ▪ 벌칙(§64) ▪ 벌칙(§65) ▪ 벌칙(§66) ▪ 양벌규정(§67) ▪ 과태료(§68)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69)

3. 조문별 검토

가. 제1장 총칙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이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수소·수소화합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수소”, “수소화합물”, “수소·수소화합물 사업”,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정의를 제시함.

안 제3조는 수소·수소화합물 사업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제정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소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수소·수소화합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란 발전용, 수송용, 산업용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부생수소, 추출수소, 수전해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액화, 고체화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수소화합물”이란 암모니아 등 수소와 다른 물질이 합성된 화합물 중 수소의 운송, 저장 및 발전 연료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정 안

3.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저장 또는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관 등을 제외한 것(이하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나.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引受基地)업: 수소·수소화합물을 하역, 인수, 저장 및 공급 등을 하기 위한 설비 및 그 부대설비가 집합적으로 설치된 기지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저장시설을 포함하는 것(이하 “인수기지”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 수소 원료물질 또는 수소화합물로부터 제조, 정제, 액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하 “제조등”이라 한다)으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제조등(석유제품 제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자가소비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

라.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

마.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자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자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등을 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바. 수소·수소화합물 운송업: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자,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자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운송을 위탁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등에 고정된 탱크 등을 이용하여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

4.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을 하는 자

나.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을 하는 자

제 정 안

다.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자: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을 하는 자

라.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자: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을 하는 자

마.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자: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을 하는 자

바. 수소·수소화합물 운송업자: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수소·수소화합물 운송업을 하는 자

사.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자: 제7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을 하는 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소·수소화합물 사업 및 수소·수소화합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먼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소·수소화합물을 저장 또는 공급하기 위한 배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른 다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정의는 대부분 제조, 판매, 운송, 수출입, 반출입과 같이 수소·수소화합물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하나, 배관업의 경우 수소·수소화합물을 저장 또는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에 사용되는 배관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이는 배관업자가 설치한 배관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사업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방식의 사업도 영위할 수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형식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배관업의 배관을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저장 또는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관을 이용하는 최종 목적에 저장 또는 공급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배관시설의 범위에 수소·수소화합물을 “저장하는 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공급”보다는 “공급” 또는 “수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은 배관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송유관을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 정의하고 있음¹²⁾.

1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소·수소화합물의 하역·인수·저장·공급에 필요한 설비가 집합된 기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배관업과 마찬가지로 인수기지업도 사업자가 구축한 인수기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사업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방식의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소·수소화합물에 대한 행위가 아닌 인수기지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수기지 중에서도 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저장시설을 포함하는 인수기지에 대해서만 제정안에 따른 인수기지업으로 보는데, 이는 공동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는 인수기지업자의 인수기지에 대해 다른 유형의 사업자들이 해당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 용량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구축되는 저장시설이 다른 사업자가 이용하는 시설인지 개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인지는 물리적인 저장용량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설치하는 사업자의 유형이나 사용 용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규모 외의 요건도 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나. 제2장 수소·수소화합물 사업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허가·등록·신고(이하 “허가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조(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및 인수기지업의 허가)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과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3. 수소·수소화합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 시설 또는 인수기지를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또는 인수기지에 대한 접근성, 주민수용성 및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및 제조업의 등록) ①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 정 안

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 및 운송업의 등록) ①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운송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운송업의 종류와 그 취급 수소·수소화합물 및 제1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운송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3항의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⑦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의 신고) ①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을

제 정 안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결격사유, 지위 승계, 사업의 개시·휴업·폐업의 신고, 허가·등록의 취소, 과징금 등 허가 등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 정 안

제9조(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로 본다.

제 정 안

제1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3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받은 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는 그 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시설기준 등 허가·등록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5.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을 폐업한 경우
6.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다른 사람

제 정 안

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자가 보세구역 밖에서 수소·수소화합물을 거래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30조를 위반하여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3. 제32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해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16. 제50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7.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8. 제5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구체적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징금)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8호, 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제 정 안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허가·등록·신고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및 인수기지업은 허가사항,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제조업, 판매업 및 운송업은 등록사항,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은 신고사항으로 규정함.

허가·등록·신고의 강학상 의미는 서로 다르나 입법과정에서 등록과 신고는 일반적으로 완화된 의미의 허가로 사용되고 있고 모두 특정 대상행위의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특정 사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방식으로 허가·등록·신고 중 무엇이 적합한지는 해당 사업의 공공성, 사업자 난립의 방지 필요성,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등을 함께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함.

먼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과 인수기지업의 경우 배관은 일반국민이 생활하는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대규모 저장시설을 갖춘 인수기지는 폭발, 누출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관 및 인수기지의 설치에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가 배관 설비의 난립으로 인한 중복을 방지하고 인수기지를 지역별로 효과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정안에서도 배관·인수기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배관과 인수기지의 이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제조업, 판매업, 운송업 및 반출입업은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도가 낮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허가보다는 등록·신고와 같은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로,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하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석유·가스 등 공급 관련 사업자 요건]

법률	사업자	사업자 요건		
		허가	등록	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국제석유거래업(자)			○
	석유판매업(자)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	
도시가스사업법	가스도매사업(자)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도시가스충전사업(자)	○		
	나프타,부생가스 등 제조사업(자)	○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		
	천연가스수출입업(자)		○	
	천연가스반출입업(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가스법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사업(자)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		
	액화석유가스위탁운송사업(자)		○	
	액화석유가스저장자	○		

다만, 제정안은 허가 등의 요건이나 변경이 필요한 주요 사항,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임 대상이 대통령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혼재되어 있어 각각의 사안이 해당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예컨대,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허가·신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반면, 등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허가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하위법령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위임하는 사항의 중요도, 하위법령 개정의 예상 빈도, 기술적인 사항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

다음으로, 과징금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에 대한 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안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촉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비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촉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원칙적으로 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8호, 제14호 및 제16호

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신고한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수소·수소화합물과 같이 수급관리가 중요하여 사업의 정지가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¹³⁾하여 사업이 지속되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은 필요적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장 폐쇄 사유와 비축의무 위반을 제외한 모든 위반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2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징금 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를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¹⁴⁾는 석유

13) 과징금은 원래 행정상의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재저분이나, 최근에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 등 취소 시 일반 국민에게 발생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갈음하는 의미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함.

정제업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 및 국제석유거래업자를 대상으로만 20억원의 과징금 상한을 적용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¹⁵⁾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만 과징금 상한을 20억원으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이 사업별로 상이하다면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의 상한도 사업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과징금)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이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21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공동이용 등(제3장)

안 제14조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에게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인수기지(이하 “배관시설 등”)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게 배관시설 등의 이용을 제공하도록 공동이용 의무를 부과함.

안 제15조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가 배관시설 등의 이용료 및 이용조건 등을 정한 이용규정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의 필요에 따라 해당 이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안
제14조(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유지·관리 및 공동이용 등)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는 수소·수소화합물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적합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는 시설능력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배관시설·인수기지 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게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다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배관시설·인수기지 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정 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배관시설·인수기지 이용규정)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 또는 인수기지의 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 또는 인수기지이용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 또는 인수기지이용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 또는 인수기지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안 제16조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가 배관시설 등을 구축할 때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안 제17조는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를 규정함.

안 제18조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수소·수소화합물을 발전용 연료로 공급하기 위한 배관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전원개발사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전원개발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제 정 안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가 배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거나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가 인수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배관시설·인수기지 구축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또는 인수기지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 또는 인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 정 안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0.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5.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의 사용허가
 2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한 특례)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또는 인수기지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

제 정 안

설비에 발전용 연료로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배관시설·인수기지 구축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본다.

②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또는 인수기지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인수기지 구축사업을 전원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또는 인수기지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관시설 등의 공동이용 및 이용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배관시설 등의 난립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및 인수기지업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에게 이용제공의무를 부과하여 다른 수소·수소화합물사업자가 원활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와 유사하게 「도시가스사업법」 16)은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

16)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생략)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매사업자에게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배관시설 이용제공의무를 부과하고 가스도매사업자로 하여금 배관시설 이용규정을 정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과 같이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에게 배관시설 등의 이용제공의무를 부과하면 다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게 배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형식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용규정 승인 및 변경명령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 불합리한 이용료나 이용조건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배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도 보장하는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여가·휴게 장소라는 공원시설의 취지, 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및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할 때 수소 배관은 도시공원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안 제17조제9호)를 의제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③ ~ ⑤ (생략)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사한 에너지 수송시설인 도시가스 배관과 송유관의 설치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고, 도시가스 배관, 송유관과 마찬가지로 수소 배관도 공공토지의 최적 이용, 접근성,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공원녹지 등 국·공유지 매설이 필요하며, 인·허가 의제를 통해 도시공원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수소 배관 인프라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전원개발촉진법」 특례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가 발전설비에 연료로 수소·수소화합물을 공급하는 배관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전원개발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석탄화력발전소나 LNG발전소는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나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혼소하여 발전하면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발전설비에 수소·수소화합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배관시설 등을 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해야 함.

그러나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의 대상을 전원설

비(발전·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배관시설 등은 그 대상이 아니고,

전원개발사업자도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만 한정¹⁷⁾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원개발사업자가 아닌 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 내에서 배관시설 등을 구축하려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해당 부지를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해제하고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별도로 받아 추진해야 함.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발전설비에서 수소·수소화합물을 발전용으로

17)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4. "토지등"이란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사용하는 경우 ① 배관시설 등 구축사업을 전원개발사업으로 간주하고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아닌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 시행을 허용하면 배관시설 등 구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안 18조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가 배관시설 등 구축사업을 전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들도 적용되는지 법률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을 배관시설 등 구축사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전원개발촉진법」의 적용 또는 준용 규정을 두도록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제4장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 안전관리 및 보호

안 제19조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가 배관시설 설치공사 시 시설·기술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신속하고 원활한 배관시설 공사를 위해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9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제 정 안

⑤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시설 공사계획에 제5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이 멸실·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으면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는 배관시설의 시공·관리,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시공 감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의 실시, 안전관리규정, 안전유지, 개선명령,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등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2조(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시공·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 ① 시공자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의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시공 감리 등)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으면 공사착공 전과 완공 후에 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리의 대상과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임시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수급상의 필요성과 해당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안전한 사용가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제 정 안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 제1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2. 안전성평가: 제1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 전 및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실시결과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시기,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제 정 안

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24조제4항에 따른 감리의 기준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4. 제27조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5. 제38조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손상방지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안전관리규정)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와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안전유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제22조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 정 안

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이 제22조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에게 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안에 있는 수소·수소화합물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관리자)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 정 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에게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⑦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수(數)·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안전교육)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시공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에 대한 정보지원, 매설상황 확인, 안전 영향평가, 협의·순회점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안전조치 등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4조(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에 대한 정보지원)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는 구멍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그 밖에 매설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확인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매설상황 확인)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

제 정 안

관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가 해당 굴착공사 대상 토지의 지하에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매설 위치의 표시
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수소·수소화합물 안전 영향평가)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소·수소화합물 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관리하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 정 안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의 작성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협의·순회점검)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관리하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안전조치 등) 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그가 설치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②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배관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한 허가권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¹⁸⁾에는 수소 배관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규정이 없어 수소 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고압가스 본시설(제조소, 저장소, 판매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 그 부속시설로서 배관시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거리 배관의 경우 배관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상충 시 사업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허가권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광역 수소 배관망의 구축을 지원하려는 취지임.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장거리·공용(公用) 수소 배관시설 설치 허가는 제정안에서, 단거리·사용(私用) 수소 배관시설 설치 허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게 되어 수소 배관시설 설치 허가가 이원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⑦ (생략)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완공된 배관시설에 대한 검사, 안전진단, 안전유지의무 등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는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판매 및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소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장거리 수소 배관에 대한 별도의 설비기준이 없어 현재 수소 배관에는 일반 고압가스 배관과 동일한 설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도시가스사업법」상 장거리 천연가스 배관의 설비기준과 비교할 때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¹⁹⁾.

이에 제정안은 수소·수소화합물 광역 배관의 설치와 관련된 별도의 안전관리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소취성²⁰⁾ 등 수소 특성을 반영한

1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 배관 기준 : 4km마다 차단밸브, 8km마다 방산설비 설치
- 「도시가스사업법」상 천연가스 배관 기준 : 8~24km마다 차단밸브, 60분 이내(약32km) 방산설비 설치 등

20) 금속 내부에 수소가 흡수되어 금속의 연성과 인성을 저하시켜 균열을 발생시키는 현상

안전관리를 통해 수소 배관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은 고압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저압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고압수소 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수소의 안전관리 체계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수소법」,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등 3개의 법률로 분산되어 법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통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자체 안전기준이 부재한 액화수소 등의 경우에는 실증특례가 추진중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진행중인 각종 실증특례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법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수소 관련 실증특례 추진현황]

구 분	특례 수	기체수소	액화수소
합 계	117	78	39
규제샌드박스('19.1~, 산업부)	93	64	29
규제자유특구('19.4~, 중기부)	24	14	10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안 제27조제4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에게 배관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치명령 위반 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입법례²¹⁾를 참고하여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1)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실시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제5장 수소·수소화합물 수급관리

안 제40조는 매년 향후 5년간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제출할 의무를 일부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급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1조 및 제42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향후 5년간 수소·수소화합물 수급 상황을 예측하고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안 제43조는 일부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게 수소·수소화합물의 비축의무를 부과되 비축의무자가 해외에서 수소·수소화합물을 직접 제조하여 수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비축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제 정 안

제40조(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 ①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자,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이하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 제출의무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 제출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소·수소화합물 공급 계획 제출의무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1조(수소·수소화합물 수급예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수소·수소화합물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이하 “수소·수소화합물 수급예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소·수소화합물의 수요량
2. 수소·수소화합물의 생산량 및 수출량·수입량
3. 수소·수소화합물 저장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수소·수소화합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소·수소화합물과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시책담당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비축시책담당기관의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 ①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자,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수소·수소화합물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을

제 정 안

비축하여야 한다.

②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자는 수소·수소화합물 수급 사정이나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소·수소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자가 해외에서 수소·수소화합물을 직접 제조하여 수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수소화합물사업자가 매년 제출하는 5년 단위의 공급계획에 대한 변경 명령권을 인정하고 있음.

국내에 공급되는 수소·수소화합물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그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제조하는 비중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²²⁾ 향후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수소 수급의 높은 변동성이 국내 수소 수급 안정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국내 수소 수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간사업자로부터 미리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제출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공급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내 수소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22) 현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로 국내 수요가 충족되나 개질수소 생산을 위한 천연가스나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기 등이 모두 해외에 풍부하여 수소 수급의 대외 의존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사업’으로 해외 수소 플랜트 구축을 추진 중임.

다만, 민간사업자가 해외에서 수소·수소화합물 또는 그 생산원료를 조달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장기인 비탄력적인 계약²³⁾이어서 민간사업자에게 정부의 명령에 따라 5년 단위의 공급계약을 변경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게 수소·수소화합물을 일정량 비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취급하는 수소·수소화합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축의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른 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수소·수소화합물도 공급의 일정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소 생태계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수소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관련 사업자가 비축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수소·수소화합물 공급이 가능함에도 일정량의 수소·수소화합물을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저장비용을 지출해 가며 비축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축의무 부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23) SK이노베이션 E&S는 해외 수소 및 생산원료 조달 계약은 비탄력적 장기계약 형태로 일방 권한으로 물량 조정 가능한 조항을 삽입하면 계약단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고 제시된 공급계획 변경 명령 위반 페널티 또한 과도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해외에서 수소·수소화합물을 직접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수소 공급이 대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비축의무 적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만, 해외에서 수소·수소화합물을 생산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원료인 천연가스나 전기를 안정적으로 조달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수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요건을 정할 때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비축의무 제외 대상을 엄밀하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바. 제6장 수소거래소 등

안 제44조는 수소거래소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거래소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5조는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운송업자에게 등록관청에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규정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제 정 안
제44조(수소거래소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수소·수소화합물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소(이하 “수소거래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소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수소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수소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소거래소 회원에 관한 사항 2.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수소·수소화합물의 현물 및 선물의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수소·수소화합물 거래대금 및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사항 4.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정보에 대한 취합·관리 및 기준지수 형성·공표에 관한 사항(대표 거래 수소·수소화합물의 품질 및 거래방법 등에 대한 정의 등 기준지수 형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검토를 포함한다) 5.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의 감시에 관한 사항 6.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소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정보이용금지

제 정 안

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78조, 제178조의2, 제179조 및 제383조제1항·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수소·수소화합물”로,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거래소”는 “수소거래소”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수소거래소 회원”으로 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소거래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감독 결과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이후에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소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수소거래소에서 거래(이하 이 조에서 “수소·수소화합물 장내거래”라 한다)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소·수소화합물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5.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소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거래소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수소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⑧ 그 밖에 수소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지정 취소, 수소거래소에서의

제 정 안

거래와 관련된 금지 행위, 수소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수소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수소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공급규정) ①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운송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소·수소화합물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등록신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소거래소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국내외 수소·수소화합물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정 상품의 거래를 담당하는 거래소를 운영하게 되면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가 상품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참여자의 거래비용을 낮추며 안정적인 가격 균형을 통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소수고 거래 규모도 작아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한 직접 거래에 문제가 없는 상품의 경우 정부가 별도로 거래소를 운영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아직 국내 수소 생태계가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고 일부 수소 수요는 자체 생산으로도 충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수소거래소 지정·운영이 필요할 정도로 국내 수소 거래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다만, 정부의 수소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 수요의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 수소·수소화합물을 해외에서 대량으로 도입할 경우 소수의 수입업체가 독과점 지위를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소거래소의 지정 근거를 미리 동 제정안에 마련할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음.

한편, 제정안은 안 제44조제4항각호로 수소거래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44조제5항각호로 수소거래소에 경고처분 또는 6개월 이내의 수소·수소화합물 장내거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44조제5항제2호의 “수소·수소화합물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이미 장내거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장내거래 업무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것이므로 가중된 제재처분인 수소거래소 지정 취소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임.

공급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자 및 운송업자로 하여금 수소·수소화합물 요금을 포함한 공급조건이 반영된 공급규정을 정해 등록관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이는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자 및 운송업자가 요금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게 하여 수소·수소화합물 소비자를 보호하고 등록관청이 관내 수소·수소화합물 거래를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 및 운송업은 수소·수소화합물의 개별 소매 단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공급받는 단가에 따라 판매요금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데 이를 매번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사업자의 부담도 클 것이며 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²⁴⁾.

예를 들어,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자의 대표적인 사례인 수소충전

24) 이와 반대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또는 인수기지업은 사업 규모가 커서 국내 수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쟁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규제 필요성이 크므로 제정안은 안 제15조에서 배관시설 등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이 포함된 이용규정을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함.

소는 사업규모, 사업형태, 사업대상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주유소와 유사한데 주유소와 달리 연료 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공급규정을 변경하여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안 제5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수소·수소화합물의 판매가격을 보고받고 이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등록관청에 대한 공급규정 신고를 규정하는 것은 규제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 제7장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

안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는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로부터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6조(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수소화합물 수급, 가격의 안정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담금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소·수소화합물을 수입하는 등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자로서 수소·수소화합물을 수입하는 자 2.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자로서 수소·수소화합물 제조등을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 금액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수소: 1킬로그램당 140원 2. 수소화합물: 수소 열량단가에 수소화합물 최종 활용형태의 발열량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 정 안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47조(부담금의 환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자가 수소·수소화합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부담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 환급받을 자가 내야 할 부담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충당을 할 때에는 환급 대상인 부담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결정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5푼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급금과 가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7조에 따른 부담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한 후 그 환급액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과다환급된 금액을 부담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된 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47조제3항에 따른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금에 더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의 징수방법, 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제47조에 따른 부담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 및 제48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제 정 안

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취급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정안은 수소의 수급, 가격 안정, 안전관리 등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미래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시대에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 감소에 따른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및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의 감소를 대체하기 위하여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다만,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국내 수소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수소 생태계가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 정부는 「수소법」²⁵⁾에

²⁵⁾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수소전문기업²⁶⁾의 지원, 조세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수소산업 육성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소 부문 부담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수소 분야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은 2025년 약 5,646 억원이었으며, 2026년도에는 8,45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
2.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3.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5.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지원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용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다.

1. 수소사업의 안전성·경제성·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용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수소 분야 정부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비목)	'20	'21	'22	'23	'24	'25	'26 예산	합계
수소생산기지구축 (민간보조)	29,940	21,600	19,840	8,820	8,120	-	-	88,320
수소생산기지구축 (지자체보조)	-	-	-	-	-	12,834	5,990	18,824
수소생산기지구축 지원 (민간보조)	-	-	-	-	-	200	180	380
수소유통기반구축 (민간보조)	-	3,596	12,846	11,363	9,834	5,869	4,853	48,361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민간보조)	-	3,250	5,100	7,979	6,821	9,185	26,458	58,793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지자체보조)	-	-	-	250	250	-	250	750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구축사업 (민간보조)	-	-	-	-	1,209	5,718	5,074	12,001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구축사업 (민간보조)	-	-	-	-	146	529	13,085	13,760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지원 (지자체보조)	-	1,000	4,000	3,000	-	-	-	8,000
수소충전소 구축 (지자체보조)	58,800	26,720	33,160	27,860	23,800	24,710	15,400	210,450
수소충전소 구축 (민간보조)	18,000	44,100	154,200	159,050	156,100	88,500	174,300	794,250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지자체보조)	-	-	-	940	10,131	10,821	16,956	38,848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민간보조)	-	-	-	500	5,000	6,352	6,500	18,352
수소차 보급 (지자체보조)	217,695	229,010	288,813	322,320	332,238	399,870	576,200	2,366,146
합 계	324,435	329,276	517,959	542,082	553,649	564,588	845,246	3,677,235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되 시행시기는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여 향후 무탄소 에너지 전환 등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 징수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²⁷⁾.

민간사업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청정수소 또는 자가수요를 위해 생산하는 수소에 대하여는 부담금 면제가 필요하며, 석유, LNG 등과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담금 징수대상자에서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자는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²⁸⁾.

둘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²⁹⁾에 따르면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27) 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는 부담금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8)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민간사업자의 의견은 [참고자료 2] 참조

29)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아. 제8장 감독

안 제50부터 제53조는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에 대한 보고와 조사, 수소·수소화합물 안전사고 발생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 등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0조(조정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수소화합물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자,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자,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자,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자 및 수소·수소화합물 운송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지도·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수소화합물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및 수소·수소화합물 수급의 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2조(보고와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소·수소화합물의 수급·가격 안정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56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수소·수소화합물 시설, 용품, 용기,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3조(사고의 통보 등) ①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후에너지환

제 정 안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수소·수소화합물 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사고
4. 수소·수소화합물 시설이 손괴되거나 수소·수소화합물 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수소·수소화합물 시설이 손괴되거나 수소·수소화합물이 누출된 사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재발 방지와 그 밖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정명령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소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경우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

수소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국내 수소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이에 상응하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수소와 유사한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등은 모두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조정명령권을 법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도 제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³⁰⁾

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조정명령)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제정안은 조정명령의 대상에서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반출입업은 보세구역에 일시적으로 저장 혹은 하역한 수소·수소화합물을 해외로 반출하기만 하므로 국내 수소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적절함.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에 대한 보고·조사와 관련하여, 안 제52조제1항은 소속 공무원 또는 “제56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소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³¹⁾은 “제56조”가 아닌 “제60조”이므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31) 「수소·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유통전담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2.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공감리
3.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29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 명령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자. 제9장 보칙

안 제54조부터 제61조는 총칙의 실체적인 규정과 관련이 있는 보험 가입, 다른 자의 토지 사용,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금지행위, 청문,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4조(보험가입) ①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수소·수소화합물 사업 관련 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①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사용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사용 사업자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토지사용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액의 산정과 보상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6조(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가격 보고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정 안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수소화합물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 보고 사업자의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 ③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및 표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금지 행위)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소·수소화합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公差(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2.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수소화합물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3. 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수소화합물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5. 폭리를 목적으로 수소·수소화합물을 사재기하는 행위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수소를 청정수소로 기망하여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7. 수소·수소화합물 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8. 그 밖에 수소·수소화합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 정 안

제5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3.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4.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35조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가 부담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유통전담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제 정 안

2.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공감리
3.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29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 명령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제61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사고의 통보를 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자의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는데 다른 자의 토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상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는 경우 그 경과지의 소유권을 모두 사업자로 이전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당사자 간의 협의와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다만,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타인의 토지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의사 합치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법에 특정 사업에 대해 공익사업에 준하는 보상

으로 다른 자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업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해당 규정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는 배관업자와 인수기지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를 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도 다른 자의 토지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정안과 달리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만 적용³²⁾하고 있음.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①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로 하여금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②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③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향후 수송용 수소 사용이 확대될 경우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은

3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국민생활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사업자 간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일반국민이 수소·수소화합물을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일반국민에게 공개·표시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일부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수소를 판매하지 않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판매가격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예를 들어, 운송만을 수행하는 수소·수소화합물 운송업자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는 직접 수소·수소화합물을 판매하지 않고 그 판매과정의 중간에서 운임을 담당하거나 배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역할³³⁾이므로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를 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도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판매하지 않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판매가격의 보고·표시의 적용을 제외³⁴⁾하고 있음.

33)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도 본인 소유의 시설을 사용하여 수소·수소화합물을 판매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의 등록을 해야 하므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까지 명시적으로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은 작음.

3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제정안의 규정에 따라 사고의 통보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중복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제정안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안전관리를 제외한 수소·수소화합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별도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과 같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체계를 따르도록 함.

따라서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 대하여 제정안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동일한 취지와 내용으로 부과하는 의무에 관한 규정은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다만, 문언상 안 제53조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사고의 통보를 한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³⁵⁾를, 안 제54조에 따라 보험에

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가입한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³⁶⁾를 각각 적용 배제하는 것이 명확하도록 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61조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1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수소 · 수소화합물 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사고의 통보를 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사고의 통보를 한 경우 이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가 제54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보험 가입)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 제10장 벌칙

안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는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2조(벌칙) ①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시설과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수소·수소화합물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수소·수소화합물 충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수소·수소화합물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수소·수소화합물 사용자의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수소·수소화합물 공급을 방해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수소·수소화합물을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승낙 없이 그의 시설을 조작하여 수소·수소화합물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수소화합물 공급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8항의 형(刑)과 같다. ⑩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승낙 없이 그의 시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

제 정 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을 영위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인수기지업을 영위한 자
3. 제5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6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 수소·수소화합물 운송업을 영위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수소·수소화합물 수출입업,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 수소·수소화합물 판매업, 수소·수소화합물 운송업을 영위한 자
3. 제43조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4. 제52조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57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적합판정(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사용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4.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제 정 안

6.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7.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간에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9.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10. 제38조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1. 제39조제2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을 영위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수소·수소화합물 반출입업을 영위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또는 인수기지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 또는 인수기지이용규정에 관한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자
 7. 제22조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관리를 한 시공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9.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30조를 위반하여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11.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

제 정 안

지 아니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12. 제35조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1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14. 제36조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15. 제44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16. 제50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52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소·수소화합물

제 정 안

- 물 배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4. 제20조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5.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6.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7. 제29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와 그 종사자
 8. 제29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32조제3항을 위반한 자
 10.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시공자
 1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4. 제56조제3항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

제 정 안

- 것으로 통보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사용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8.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시설 손괴죄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시설, 배관시설 및 충전시설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구체적으로 제조시설 및 배관시설을 손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충전시설을 손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임.

수소·수소화합물의 제조시설, 배관시설 및 충전시설의 의미는 형벌의 구성요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손괴당한 시설이 무엇에 해당하

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으나,

제정안의 규정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일반인이 제조시설, 배관시설, 충전시설을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이나 하위법령에서 형벌 부과 가능성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의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손괴죄를 규정하면서 손괴 대상이 가스제조시설 및 가스배관시설인 경우와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인 경우 차등하여 법정형을 부과³⁷⁾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달리 가스공급시설의 정의를 법률에 두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세부적인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명확하게 정의³⁸⁾하고 있음.

37)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벌칙)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 : 도시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3. 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충전사업소 안에서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설비

카. 부칙

부칙은 제1조에서 제정안의 시행일, 제2조에서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
에 대하여 규정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 판매허가를 받거나 수입업자의 등록 또는 제조신고를 하고 이 법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사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허가, 등록 또는 신고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

4. 나프타부생가스 제조시설: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5. 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바이오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처리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6.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부 칙

제6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시행일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되, 수소·수소화합물의 비축의무 부과(안 제43조), 수소거래소 지정(안 제44조) 및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안 제46조~제49조)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일부 규정에 대해서 시행일을 명시하지 않고 5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아직 수소·수소화합물의 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비축의무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수소거래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³⁹⁾에 따르면, 특정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하위법령에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위임

39) [2024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의 시행일은 그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령의 시행에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를 마치는 시점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위임입법의 원칙이 시행일 위임 시에도 적용되므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법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해당 법률의 본질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가능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안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 특정되기 어려움에도 제정 시 관련 내용을 미리 명시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향후 반드시 입법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일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면서 제정 시점에 미리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법 필요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규정이 필요한 시점에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는 수소경제 초기 선도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시행시기를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중 하나로서 수소를 다루는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을 영위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로 간주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해당 사업자들이 제정안의 적용을 받는 수소·수

소화합물 사업자가 되려면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과조치를 규정한 취지는 기존 사업자에게 제정안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제정안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 법체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임.

그러나 안 부칙 제2조는 문언상 기존 사업자를 제정안에 따른 사업자로 간주하도록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유예기간 부여라는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부칙 제2조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 판매허가를 받거나 수입업자의 등록 또는 제조신고를 하고 이 법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u>이 법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사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u>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조(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 판매허가를 받거나 수입업자의 등록 또는 제조신고를 하고 이 법에 따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u>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u>

제 정 안	수 정 의 견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허가, 등록 또는 신고의 효력은 상실한다.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①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안 제40조), 수소·수소화합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안 제56조), 금지행위(안 제57조) 및 과태료(안 제68조) 규정의 내용과 유사한 「수소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② 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과징금 및 부담금 등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편입하도록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개정하고 있음.

「수소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일부 수소 사업자가 기존 「수소법」에 따라 부과받고 있던 의무 및 금지행위를 제정안으로 일원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부칙 제3조제1항은 「수소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소법」에 남게 되는 조문인 제52조제4호 및 제5호는 제정안(제57조제4호 및 제8호)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수소법」 제52조 전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금지행위(「수소법」 제52조)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수소

법」 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⁴⁰⁾도 함께 삭제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57조 및 「수소법」 제52조 비교]

제 정 안	「수소법」
제57조(금지 행위)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소·수소화합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公差(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2.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수소화합물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3. 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u>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수소화</u>	제52조(금지 행위) 수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公差(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2.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3. 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u>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의 생산</u>

4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
2. 제52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자
3. 제52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자
4. 제52조제3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2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소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한 자
2. 제52조제5호를 위반하여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자

제 정 안	「수소법」
<u>합물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u> 5. 폭리를 목적으로 수소·수소화합물을 사재기하는 행위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수소를 청정수소로 기망하여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7. 수소·수소화합물 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수소·수소화합물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8. 그 밖에 수소·수소화합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u>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u> 5. 그 밖에 수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안 부칙 제3조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u>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u>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u>제52조를 삭제한다.</u> <u>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u>

제 정 안	수 정 의 건
제6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 략)	제6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 략)

문 의 처
02)6788-5533

[참고자료 1]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1. [활용]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① 【수송】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활성화

- **(수소버스)** 정부 보조금 상향* 등 구매보조금 확대('22년 340대 → '23년 700대), 지자체 시범사업** 및 경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 * 예) 시내버스(3억원) : (기존) 정부 1.5, 지자체 1.5 → ('23년~) 정부 2.1, 지자체 0.9
 - **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내 운송사에 연료전지시스템 보조금 지원('23년 정부안) : 100대
- **(특수차)** 수소트럭·수소청소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 규모를 확대('22년 10대 → '23년 220대)하고, 수소지게차 보급 여건*도 마련
 - * 수소지게차의 충전소 충전 실증 중, 안전성 검증 후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확산)** '사업용차량 무공해 전환 로드맵' 및 세제 등 제도 개선* 추진
 - *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전세버스 총량제 완화 등

② 【발전】 석탄·LNG 발전소의 연료전환 및 분산형 수소발전 확산

- **(석탄·LNG 발전소의 연료전환)** 수소 50%, 암모니아 20% 이상 혼소를 위한 핵심부품 개발 및 유형별 실증(가스터빈, 보일러-미분탄/유동층 등)
 - '27년까지 기술개발 및 실증을 완료하고 '28년부터 혼소발전 확산
 - * 신규 LNG 발전소는 수소 혼소 또는 전소 가능 설비로 도입
- **(분산형 수소발전 확산)**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기-열 동시 활용,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 등 연료전지 보급 확산
 - * 주유소·LPG 충전소+재생e/연료전지, 자가 발전으로 전기차 충전 수요에 활용
 -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유연한 수소터빈(소형), 수소엔진도 개발·활용

③ 【산업】 온실가스 多배출 산업의 수소 적용 준비

- **(철강)** 무탄소 철강생산이 가능한 수소환원제철 전환 추진
 - * 기초기술 개발('23~'25, 269억원), 사업 적정성 검토 후 후속 개발 및 실증 지원
- **(석유화학)** 석유화학 설비에 투입하는 연료(전부, 일부)를 수소로 전환

2. [유통]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

① 【수송】 액화수소 기반 인프라 마련

- (액화플랜트) 연간 4만톤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플랜트 구축('23년)
* (인천) SK E&S, 3만톤, (울산) 효성등, 5.2천톤, (창원) 두산에너지빌리티등 1.7천톤
- (액화충전소 확대) 액화충전소 구축 보조금 확대* 및 기체충전소를 액화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개조 등 지원
*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보조금(70억원/개소) : ('22년) 5개소 → ('23년 정부안) 10개소

② 【발전】 수소·암모니아 발전용 인프라 구축

- (인수기지) 발전소 밀집 지역 인수기지 구축('29년 액화수소 10만톤급, '30년 암모니아 400만톤), 암모니아→수소 전환 설비(크래킹) 도입
- 수소항만 조성계획 수립 및 항만사용료 감면 등 지원
- (수소 배관망) 액화수소 인수기지에서 수도권 LNG 발전소까지 단계적 배관망 구축((1단계, '25~'29) 당진-평택 → (2단계, '26~'31) 평택-부천)

3. [생산]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①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반 확충

- (그린수소) 고효율·대량생산 기술력 확보 및 생산기지 시범구축('23년 2개소)
- (블루수소) 대규모 생산기지 구축 및 CO₂ 해외이송 지원*
* 포집된 CO₂를 해외 저장소로 이송을 위한 국가간 협정 체결 추진
- (원자력수소) 기반연구('22~'24년, 한수원) 후 원전연계 실증·상용화 추진

② 해외 청정수소 생산 본격화

- (시범사업) 유형별 대표 프로젝트(블루수소(중동), 그린수소(동남아))를 선정하여 해외 현지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추진('23~'26년)
- (운반선) 암모니아(6만톤급) 및 액화수소(3천톤급) 운반선 건조 추진
- (해외 수소 개발 지원) 해외개발 지원 근거 마련(자원안보특별법, '22.8월 발의), 민·관 협업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금융지원 추진

4. [제도] 수소시장 제도적 기반 마련

① 【발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23년 상반기)

- (수소발전량)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 고려

* 수소발전량(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 '30년 29TWh, '36년 71.6TWh

- **(구매자) 한전·구역전기사업자 의무구매, 일반기업도 직접구매 가능**
 - * RE100 수요기업은 재생E로 생산된 수소를 연료로 한 발전량 구매시 RE100 인정 가능
- **(공급자) 연료전지, 수소터빈, 석탄-암모니아, 수소엔진 등 발전사업자**

② 【유통】 수소 유통 기반 구축

- **(수소사업법 제정) 발전 등 에너지원으로 본격 활용에 대비, 석유·가스·전기 분야와 같이 수소사업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23년)**
 - * 주요내용 : 유통단계별 사업자 정의, 수급계획 수립, 비축의무 부여, 부과금 등
- **(유통질서 확립) 수소거래시장 개설(수송용→발전·산업용 확대), 전국 충전소와 연계*하여 판매가격 등 실시간 정보 제공, 정량·품질검사 추진**
 - * '22.11월 기준, 운영 중인 충전소 130개소 중 92개소만 연계

③ 【생산】 청정수소 인증운영체제 마련

-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기준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23년)**
 - ※ 청정수소 기준(안) : 온실가스 배출 최대 5kg CO₂eq./kgH₂ 이하 / 美 4kg, EU 3.4kg
- **(인증기관) 효율적인 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기관 지정방안 마련('23년)**

IV. 기대효과

- ☐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30년 경제적 파급효과 47조원, 고용유발 10만명)
- ☐ 에너지 안보 강화(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 ☐ 온실가스 대규모 감축(수송 '30년 135만톤, 발전 '36년 2,679만톤)

[참고자료 2]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 관련 민간사업자 의견

기업명	의견 내용
SK이노베이션E&S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홀딩스 에이치엔파워	○ 수소경제 초기, 선도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부담금 도입 여부, 시행 시점 등 논의 필요 ○ 부담금 삭제가 어려울 경우, (부칙 제1조) “공포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규정을 5년→15년으로 변경하는 등 시행 시점 연기 필요
고려아연 (주)코멤텍 포스코홀딩스	○ 그린수소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에 따른 차등 부담 구조 도입이 필요 - 제46조의 부담금 산정 시 탄소배출계수 또는 청정수소 인증 여부에 따른 감면 규정을 추가할 필요 ○ PEM 수전해 사업은 초기 투자비와 높은 전력비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자에게 kg당 최대 140원의 부담금 부과는 산업 육성이 아닌 시장 진입의 장벽이 될 수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되는 청정수소(수전해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 필요 ○ 자가수요를 위해 생산하는 경우 부담금 제외 필요
롯데케미칼 (주)코멤텍	○ 수소·수소화합물 제조업자는 부담금 징수대상자에서 제외 필요 - 석유, LNG 등은 국내 제조업에 대해서 별도의 부담금 제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다른 수입제품과 마찬가지로 수입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나, 제조업자에게 제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석유, LNG 등 다른 품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 부담금의 목적이 ‘수급 및 가격 안정’이라면 시장 초기 단계인 국내 생산자가 아닌 대규모 수입사나 기존 화석연료 기반 수소생산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